

공 고 문(안)

2016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

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4.12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□ 지원 규모 : 총 39억원

- 용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
 - ※ 단,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
- 자금용도 : 운용자금, 기술개발자금
 - 운용자금 :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
 - 기술개발자금 :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
- 용자대상
 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,
 - 벤처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,
 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(기술신용보증, 신용보증활용 가능)
 - ※ 단,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(별첨참조)은 용자제외
- 용자조건
 - 상환조건 :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
 - 금 리 : 연리 2.0%

□ 지원 기준

- 우선지원대상
 - '일자리 창출 우수기업', '사회적기업' 및 '강남구 업종별 유망 중소기업'은 우선지원
 -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업체 또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업체

- 용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
 - ① 특허,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
 - ② 수출 주력 기업
 - ③ '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'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
 - ④ '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'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
 -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

□ 신청 방법

- 접수기간 : 2016. 4.12.(화) ~ 5. 6.(금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)
 - ※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: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(☎ 545-3470, 547-6190)
- 제출서류
 - 공통제출서류
 - 용자신청서(소정양식)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
 -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전기, 당기 나온 회계사확인 필) 1부
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(최근 2년) 1부
 -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(최근3개월) 사본 1부
 - ※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(www.gangnam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 - 추가제출서류 (해당업체에 한함)
 - 수출실적 증명서류
 - 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증 등
 - 벤처기업, 여성기업 확인서
 - 훈·포장, 표창장, 협회추천서, 기부금영수증 등
 -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(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)
 - 해당 인증서(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사회적 기업 등)
 - ※ 제출하실 사본 문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
 - ※ 담보 없을경우에는 서울신용(기술)보증재단(기금) 등에서 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확인 요함
 - ※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 (용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가능, 미상환시 제외 원칙)

□ 기타 사항

-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환수조치
- 휴업, 폐업, 타시도로 이전시에는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 하여야 함

※ 문의 :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(☎ 02-3423 - 5572)